

2015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검 토 보 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1억 9천 1백만원
- 징수결정액 : 19억 1천 3백만원
- 실제수납액 : 14억 4천 7백만원
- 미수납액 : 4억 6천 6백만원
- 다음연도이월액 : 4억 6천 6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75.6%(전연도 96.7%)임.

〈2015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 예산과목 (장/관/항/목)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A) | 수 납 액 (B) | 미수납액 | 수납율 (B/A) |
|-------------------|------|--------------|--------------|------|--------------|
| 합 계 | 191 | 1,913 | 1,447 | 466 | 75.6 |
| 세외수입 | 191 | 1,913 | 1,447 | 466 | 75.6 |
| 경상적 세외수입 | 191 | 624 | 622 | 2 | 99.7 |
| 공유재산임대료 | 191 | 624 | 622 | 2 | 99.7 |
| 기타이자수입 | - | - | - | - | - |
| 임시적 세외수입 | - | 1,289 | 825 | 464 | 64.0 |
| 변상금및위약금 | - | 705 | 321 | 384 | 45.5 |
| 시·도비반환금수입 | - | 421 | 346 | 75 | 82.2 |
| 그외수입 | - | 163 | 158 | 5 | 96.9 |

2. 세출결산

- 예산액 : 400억 6천 1백 만 원
- 예산증감 : 1억 4천 8백 만 원
- 예산현액 : 402억 9백 만 원
- 지출액 : 294억 1천 3백 만 원
- 이월액 : 74억 6천 7백 만 원
- 불용액 : 33억 2천 9백 만 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8.3%(전연도 8.9%)가 발생
- 집행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7억 7천 7백만 원, 집행잔액 25억 5천 2백만 원(낙찰차액 등) 등임.

< 2015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 예산현액 (A) | 지출액 (B) | 다음연도 이월액(C) | 불용액 (D=A-B-C) | 불용율 (%) |
|----------------------------|---------------|---------------|----------------|------------------|-------------|
| 총 예산 | 40,209 | 29,413 | 7,467 | 3,329 | 8.3 |
| 사업예산계 | 39,973 | 29,220 | 7,467 | 3,286 | 8.2 |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 18,156 | 9,829 | 6,769 | 1,558 | 8.6 |
|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 18,156 | 9,829 | 6,769 | 1,558 | 8.6 |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 4,057 | 3,941 | - | 116 | 2.9 |
|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 4,057 | 3,941 | - | 116 | 2.9 |
|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 조성 | 9,845 | 9,140 | - | 705 | 7.2 |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 9,340 | 8,739 | - | 601 | 6.4 |
|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및 소통강화 | 505 | 401 | - | 104 | 20.6 |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 5,507 | 5,040 | 46 | 421 | 7.6 |
|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권익증진 | 1,178 | 982 | 46 | 150 | 12.7 |
|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 4,329 | 4,058 | - | 271 | 6.3 |
|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 247 | 213 | 16 | 18 | 7.3 |
|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 247 | 213 | 16 | 18 | 7.3 |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 2,161 | 1,057 | 636 | 468 | 21.7 |
|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 2,161 | 1,057 | 636 | 468 | 21.7 |
| 일반예산계 | 236 | 193 | - | 43 | 18.2 |
| 기본경비 | 236 | 193 | - | 43 | 18.2 |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4건 총 3억 4천 3백만원

- 서울혁신파크 시설관리근로자 임금 지급 : 7천 4백만원
- 조직개편에 따른 초단시간 근로자 임금 증가분 : 6백만원
- 마을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비(2건) : 2억 6천 3백만원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4건 총 2억 8백만원

- 조직개편에 따른 대민활동비 증가분 : 2천 2백만원
- 협치자문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 1천만원
- 마을계획단 교육비용 : 2천 6백만원
- 청년청 조성에 따른 사업비 : 1억 5천만원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12건 74억 6천 7백만원

○ 명시이월 : 7건 57억 6천 7백만원

-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사업 설계 용역비용 등 공사비(3건) :
54억 8천 9백만원
- 천만상상오아시스 재개발 용역비용 : 1억 4천 5백만 원
- 인권교육 모니터링 용역비용 등 : 4천 1백만 원
- 인권도시 서울의 비전과 로드맵 구축을 위한 용역비용 : 9천 2백만 원

○ 사고이월 : 5건 17억원

- 서울혁신파크 1동 전력설비 개선공사비용 등(2건) : 11억 3천 5백만 원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행사 용역비용 : 4천 6백만 원

- 갈등조정 지원 용역비용 : 1천 6백만 원

- 인권현장 표지석 설치 용역비용 : 5억 3백만 원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5년도말 관리 공유재산

- 토지 102,906 m^2 273,999백만원,

- 건물 53,377 m^2 39,425백만원,

- 기타 1건 321백만원,

총 313,745백만원 상당의 금액

〈 2015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 구 분 | | 2014년도말 보유현황 | 당해연도 증감액 | | 2015년도말 보유현황 |
|------|-------|-----------------|----------|----|-----------------|
| | | | 증가 | 감소 | |
| 합 계 | | 199,102 | 114,643 | - | 313,745 |
| 행정재산 | 계 | 199,102 | 114,322 | - | 313,424 |
| | 공용재산 | 199,102 | 114,322 | - | 313,424 |
| | 공공용재산 | - | - | - | - |
| | 기업용재산 | - | - | - | - |
| | 보존재산 | - | - | - | - |
| 일반재산 | | - | 321 | - | 321 |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5년도말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10개, 현재액 1천 9백만원임.

〈 2015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 구분 | 2014년도말 보유현황 | | 당해연도 증감액 | | | | | | 2015년도말 보유현황 |
|------|-----------------|----|----------|------|----|----|------|----|-----------------|
| | | | 증가 | | | 감소 | | | |
| | | | 구매 | 관리전환 | 소계 | 매각 | 관리전환 | 소계 | |
| 합계 | 수량 | 6 | 4 | | 4 | | | | 10 |
| | 금액 | 12 | 7 | | 7 | | | | 19 |
| 일반회계 | 수량 | 6 | 4 | | 4 | | | | 10 |
| | 금액 | 12 | 7 | | 7 | | | | 19 |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가. 과학적인 세입예산운용 및 미수납액 저감 대책수립 요망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75.6%로 전연도(96.7%)보다 세입징수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음.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 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변상금및위약금’, ‘시·도비반환금수입’이나 ‘그외수입’과 같이 당초 예산은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 조치한 예산과목이 있는가 하면, 예측 가능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경우에도 예산액(1억9천1백원) 대비 실제수납액(6억2천2백만 원) 비율(325%)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기법에 의하지 아니한 주먹구구식 세입예산편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음.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 예산과목 (장/관/항/목) | 예산현액 (A) | 징수결정액 (B) | 수 납 액 (C) |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대비 수납률 (C/B) | 예산현액대비 수납률 (C/A) |
|-------------------|-------------|--------------|--------------|------|-------------------------|------------------------|
| 합 계 | 191 | 1,913 | 1,447 | 466 | 75.6 | 757.5 |
| 경상적세외수입 | 191 | 624 | 622 | 2 | 99.7 | 325.6 |
| 공유재산임대료 등 | 191 | 624 | 622 | 2 | 99.7 | 325.6 |
| 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 | 0 | 1,289 | 825 | 464 | 64.0 | 825 |
| 변상금및위약금 | 0 | 705 | 321 | 384 | 45.5 | 321 |
| 시도비반환금수입 | 0 | 421 | 346 | 75 | 82.2 | 346 |
| 그외수입 | 0 | 163 | 158 | 5 | 96.9 | 158 |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내역>

(단위:천원)

| 예산과목 | 2016년도 | 2015년도 | | 2014년도 | |
|-------------------|---------|--------|---------|--------|---------|
| | 예산액 | 예산액 | 수납액 | 예산액 | 수납액 |
|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 105,746 | 0 | 824,814 | 0 | 141,513 |
| 변상금 및 위약금 | 105,746 | 0 | 320,868 | 0 | 29,782 |
| 시도비반환금수입 | 0 | 0 | 346,312 | 0 | 76,592 |
| 그외수입 | 0 | 0 | 157,634 | 0 | 35,139 |

- 특히, '기타수입'의 경우는 2014년 이래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에는 '변상금 및 위약금'만 일부 편성하고, '그외수입'의 경우는 여전히 세입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음.
- 서울혁신기획관은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발생 사안별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는 재정 운용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후 적정한 세입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고 있는 것은 97건에 4억 6천 6백만원으로 전연도(18건, 4천2백만원) 미수납액 대비 1,110% 상승한 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5회계연도 미수납액 금액별 건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 연도 | 구분 | 계 | 금액별 | | | | | |
|------|----|---------|---------|---------------------|----------------------|-----------------------|---------------------|---------|
| | | | 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015 | 건수 | 97 | 51 | 27 | 8 | 6 | 4 | 1 |
| | 금액 | 466,115 | 2,128 | 11,451 | 17,149 | 43,669 | 235,279 | 156,439 |
| 2014 | 건수 | 18 | 6 | 6 | 3 | 2 | 1 | - |
| | 금액 | 42,233 | 175 | 2,117 | 6,160 | 13,779 | 20,000 | - |

2. 세출결산

가. 예산편성 시 불충분한 수요 분석으로 인한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1) 서울혁신파크 운영사업 민간위탁금 전용

- “서울혁신파크 운영”사업 중 민간위탁금(57억4천3백만원)의 경우는 당초 27억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혁신단체들의 활동 공간 조기마련 요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62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서울혁신파크 활성화 계획” 수립 후 입주자를 조기에 확대 모집(110여개 단체, 550명을 조기 모집·입주)하기 위하여 3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사업임.
- 동 사업 중 ‘민간위탁금’은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7천 4백만원을 전용해 주고도, 6억 6천 3백만원을 불용(불용률 11.7%) 시켰음. 민간위탁금은 예산편성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에 대한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협약서에 따라 지출되어야 하는바, 관련 예산의 전용 및 과도한 불용액 발생은 당초 부실한 산출기초의 산정뿐만 아니라 협약서상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의 경우에는 7천4백만원의 예산을 증액 전용(당초예산 7억7천3백만원)하였으나, 1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불용시켰는바, 아예 예산전용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을 사전에 충분한 실소요 예산에 대한 검토도 없이 자의적으로 전용하고 불용시키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임.

〈‘민간 위탁금’의 전용사용〉

(단위: 천원)

| 예산과목 | | 예산액 | 예산의 전용 | | 예산현액 | 지출액 | 불용액 (불용률) |
|--------------|-------|-----------|---------|--------|-----------|-----------|--------------------|
| 세부사업 | 통계목 | | 감액 | 증액 | | | |
| 서울혁신 파크운영 | 민간위탁금 | 5,743,772 | -74,059 | | 5,669,713 | 5,006,038 | 663,675 (11.7%) |
| | 공공운영비 | 773,200 | | 74,059 | 847,259 | 682,388 | 164,871 (19.4%) |

- 또한, 전용사유로 서울혁신파크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서 체결 과정이 예정보다 지연되어 당초 2015년 4월부터 민간위탁기관이 지급해야 할 서울혁신파크 시설관리용역 근로자 임금 1개월분을 전용하여 우선 지급하기 위해 예산부족액을 충당하였다고는 하나,
- ‘민간위탁금’은 명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철저히 사전에 검증을 거쳐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 대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바,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하다 할 것이며,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또한 부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것임.
-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에 계획된 대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지도감독 노력 및 신중한 예산전용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전용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11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커뮤니티 공간운영지원 공모사업의 연속 사업 지원 증가에 따라 동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억 6백만원과 유희가압장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대부료 직접 납부를 위해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5천 7백만원을 전용하는 등 총 2억6천3백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음.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의 전용사용

(단위: 천원)

| 예산과목 | | 예산액 | 예산의 전용 | | 예산현액 | 지출액 | 불용액 (불용률) |
|--------------------|---------------|-----------|----------|---------|---------|---------|-----------------|
| 세부사업 | 통계목 | | 감액 | 증액 | | | |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 자치단체 자본보조 | 1,160,000 | -206,065 | | 896,567 | 889,332 | 7,235 (0.8%) |
|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522,000 | | 206,065 | 728,065 | 726,284 | 1,781 (0.2%) |
| | 자치단체 자본보조 | 1,160,000 | -57,368 | | 896,567 | 889,332 | 7,235 (0.8%) |
| | 사무관리비 | 17,400 | | 57,368 | 74,768 | 71,477 | 3,291 (4.4%) |

- 산출기초를 보면, 물리적으로 3년차를 모두 지원해도 18개소 밖에 지원할 수 없음에도, 산출기초를 34개소로 책정한 것은 실소요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관례적인 예산 편성에 기인한다 할 것이며, 예산의 상당부분을 자의적인 전용을 통해 임의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도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행태에 대한 책임 여부와 함께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5년도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 내역

| 당 초 | 집 행 | 차 액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522,000천원 ·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 512,000천원 - 신규 : 10,000천원 X 17개소 = 170,000천원 - 2년차 : 10,000천원 X (40개소 X 60%) = 240,000천원 - 3년차 : 10,000천원 X (34개소 X 30%) = 102,000천원 - 시·구유건물 공간확보 지원 = 10,000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726,284천원 ·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 718,064천원 - 신규 : 13,037천원 X 15개소 = 195,556천원 - 2년, 3년차 : 14,514.1천원 X 36개소 = 522,508천원 - 산림, 천연기념장 공간 확보 지원 = 8,220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증 204,284천원 ·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운영비 : 증 206,064천원 - 신규 : = 증 25,556천원 - 2년, 3년차 : = 증 180,508천원 - 산림, 천연기념장 공간 확보 지원 = 감 1,780천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자본보조 : 1,160,000천원 ·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시설비 : 560,000천원 - 30,000천원 X 17개소 = 510,000천원 - 시·구유 건물 공간확보 지원 = 50,000천원 · 유희가압장 등 거점공간 조성비 : 600,000천원 - 300,000천원 X 2개소 = 600,000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자본보조 : 889,332천원 ·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시설비 : 299,214천원 - 19,947.6천원 X 15개소 = 299,214천원 - 시·구유 건물 공간확보 지원 = 0원 · 유희가압장 등 거점공간 조성비 : 590,118천원 - 산림, 천연기념장 지원 = 590,118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자본보조 : 감 270,668천원 ·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시설비 : 감 260,786천원 - = 감 210,786천원 - 시·구유 건물 공간확보 지원 = 감 50,000천원 · 유희가압장 등 거점공간 조성비 : 감 9,882천원 - 산림, 천연기념장 지원 = 감 9,882천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 17,400천원 · 사업선정심의위원회 운영 - 100천원 X 7명 X 연6회 X 각2회(서면, 면접심사) = 8,400천원 · 회의자료(책자) 인쇄 및 유인물제작 - 20천원 X 6회 X 3종 X 25부 = 9,000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 71,477,160원 · 사업선정심의위원회 운영 - 간담회 및 수당 지급 = 4,781,800원 · 회의자료(책자) 인쇄 및 유인물제작 - 인쇄 및 유인물 = 9,327,810원 · 가압장 대부료 납부 - 산림, 천연기념장 1년 = 57,367,55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관리비 : 증 54,077,160원 · 사업선정심의위원회 운영 - 간담회 및 수당 지급 = 감 3,618,200원 · 회의자료(책자) 인쇄 및 유인물제작 - 인쇄 및 유인물 = 증 327,810원 · 가압장 대부료 납부 - 산림, 천연기념장 1년 = 증 57,367,550원 |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하여 2013년 35개소 지원, 2014년 신규 44개소 및 2년차 18개소 지원하였음. 2015년의 당초 사업예산서상의 산출기초를 보면 신규 17개소, 2년차 40개소, 3년차 34개소를 지원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신규는 15개소, 2년차와 3년차는 총 36개소를 지원하였음.

3)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허브 운영사업 변경사용 후 불용 과다

- 서울혁신기획관의 2015회계연도 변경사용은 8건이나 되고, 이 중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 사업은 2천6백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4억원) 대비 불용률이 18.8%(7천5백만원)로 높게 나타났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사업의 경우도 예산을 타 사업으로 변경사용했음에도 예산의 34.6%가 불용되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허브 운영”사업의 경우,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신규 조성에 따라 공간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사용(1억5천만원)하였으나, 변경사용 후 불용액이 2억1천8백만원이 발생했는바,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알 수 있음.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의 경우에도 1억5천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 사용했음에도 불용률이 15.4%에 달하는 등 당초 예산편성시 산출근거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증절차 없이 예산을 변경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바,
-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예산이 편성·집행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성적인 전용 및 변경사용 지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 사 업 | 당초 예산 | 변경사용 (승인일) | 예산현액 | 지출액 | 불용액 | 불용률 |
|-------------------------------------|-----------|---------------------------|-----------|-----------|---------|-------|
| 공유서울 확산 (사무관리비) | 234,350 | -22,200 (2015.07.20.) | 205,956 | 201,945 | 4,011 | 1.9% |
|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특정업무경비) | 25,800 | 22,200 (2015.07.20.) | 48,000 | 46,941 | 1,059 | 2.2% |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행사운영비) | 19,100 | -10,340 (2015.11.16.) | 8,760 | 5,725 | 3,035 | 34.6% |
| 민·관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 22,453 | 10,340 (2015.11.16.) | 32,793 | 32,334 | 459 | 1.4% |
|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400,000 | -26,000 (2015.07.27.) | 374,000 | 303,500 | 70,500 | 18.8% |
|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300,000 | 26,000 (2015.07.27.) | 326,000 | 326,000 | 0 | 0% |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력 (민간경상사업보조) | 245,000 | -150,000 (2015.06.29.) | 95,000 | 80,324 | 14,676 | 15.4% |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허브 운영 (민간위탁금) | 3,049,484 | 150,000 (2015.06.29.) | 3,199,484 | 2,981,470 | 218,014 | 6.8% |

나. 혁신파크 조성사업 계획적 관리 필요

- 2015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에서 2015년 추진 공사 중 긴급 공시한 공사계약 건이 9건(총 공사계약 금액은 45억 3천 9백만원)으로, 긴급공시를 하게 되면 공시기간이 짧아져 결국 참여 업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부실시공에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또한 입찰시 경쟁률이 낮아져 공사금액이 상향 결정될 우려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2015년 긴급 공시한 공사계약 〉

| | |
|------------------------------------|----------|
| - 서울혁신파크 소규모 건축물(4.8동) 리모델링시행 및 계약 | 184백만원 |
| - 서울혁신파크 담장개발 녹화사업시행 계약 | 349백만원 |
| - 서울혁신파크 중소규모 건축물 개보수공사 설계용역계약 | 151백만원 |
| - 서울혁신파크 중소규모 건축물 개보수공사계약 | 1,902백만원 |
| - 서울혁신파크 청년청 조성 기계설비공사 | 127백만원 |
| - 서울혁신파크 청년청 조성 전기공사 | 142백만원 |
| - 서울혁신파크 중소규모 건축물 개보수 기계설비공사 | 485백만원 |
| - 서울혁신파크 중소규모 건축물 개보수사업 전기공사 | 972백만원 |
| - 서울혁신파크 중소규모건축물 개보수사업 통신공사 | 227백만원 |

- 집행부는 향후 긴급공시를 자제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중·장기적이며 치밀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주요 내용〉

| |
|--|
| -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은평구 통일로 684 일대(구 질병관리본부 일대)에 서울 혁신파크를 조성 운영하고 있음. 2015년 서울혁신파크 예산액은 8,462백만원 이고 이중 명시이월 5,489백만원, 사고이월 1,135백만원, 집행액은 1,282백만원임. |
| - 2015년 진행된 공사 중 아래 공사는 긴급 공시한 공사계약 9건이고 이들 공사의 총 공사계약 금액은 4,539백만원임. 긴급공시를 하면 공시기간이 짧아져 결국 참여 업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부실시공에 원인이 될 우려가 있고 또한 입찰경쟁이 낮아져 공사금액이 상향 결정될 우려가 있음.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항2호에는 조 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공시를 할 수는 있으나, 이는 꼭 긴급히 필요 할 때로 판단되므로 서울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공시를 자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 행정 편의적인 사고이월 지양 필요

- 서울혁신기획관의 2015년도 사고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등 총 5건에 17억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시켰음.

< 사고이월 현황 >

(단위 : 천원)

| 과목 | | 예산현액 ㉠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 집행잔액 ㉠-㉡-㉢ |
|----------------------------------|-----------------|-----------|-------------|-----------|--------------|-----------|---------------|
| 세부사업 | 통계목 | | | | 명시 이월 | 사고 이월 | |
|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 시설비 및 부대비 | 8,462,000 | 3,980,258 | 1,281,713 | 5,488,831 | 1,134,969 | 556,485 |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 행사실비 보상금 | 260,000 | 163,454 | 117,100 | | 46,354 | 96,546 |
|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 사무 관리비 | 117,800 | 116,168 | 99,998 | | 16,170 | 1,631 |
| 인권 현장체험프로 그램 개발·운영 | 시설비 | 1,000,000 | 823,920 | 321,000 | | 502,920 | 176,080 |

-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시설비)은 2015년 당초 122억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혁신파크 활성화 추진계획 변경(2015. 4. 27)에 따라 2015년 제26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2억4천8백만원을 감액한 바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예산 중 상당부분을 사고이월(11억3천4백만원) 및 명시이월(54억8천8백만원)처리하고도 과도하게 집행잔액(5억5천6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사업을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집행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예산 편성시 철저한 정책설계 없이 예산확보에만 주력하는 부서이기주의의 전형이라 하겠음.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 2015 예산 | | 2015예산 (추경예산안) | 당초예산대비 | |
|-----------------|---------|-----------------|-------------------|--------|----|
| | 당초 | 최종 (6.30 현재) | | 증감 | 비율 |
|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 12,210 | 12,210 | 7,962 | △4,248 | 66 |

○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은 인권현장을 역사성, 상징성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인권을 이해할 수 있는 탐방 코스(인권현장 100개소)를 개발·운영하려는 것으로 당초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5년 제26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인권현장 상징 조형물 설치(250,000천원 × 4개소)를 위해 10억원(시설비)을 증액 편성한 바 있음.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 2015 예산 | | 2015예산 (추경예산안) | 당초예산대비 | |
|----------------------------|---------|-----------------|-------------------|--------|------|
| | 당초 | 최종 (6.30 현재) | | 증감 | 비율 |
|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시설비) | - | - | 1,000 | 1,000 | 1000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토지 소유주 등과의 협의 등 사전 절차 진행 및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2015년 11월 예정)를 바탕으로 입지, 규모, 대상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된바 있으며, 결국 인권현장 표지석 설치 관련 기관 협의 등으로 계약체결이 12월에 이루어져 5억3백만원을 사고이월시키고, 1억7천6백만원을 불용시키는 등 총 확보예산의 67.9%가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과도한 불용액 발생은 2015년 제262회 임시회에서 긴급하게 요청했던 메르스 추경예산 편성 및 의회 의결의 취지를 퇴색하게 했으며, 주먹구구식의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방증할 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심의시 이미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있던 만큼 의회의 승인을 바탕으로한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였어야 함에도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며, 향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거나 적정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확보 및 철저한 예산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민간위탁 사업의 체계적 관리 필요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6건으로, 2015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은 135억 1천만원이며, 불용액은 12억 8천 9백만원임(불용률 9.5%).

(단위 : 천원)

| 위탁사무명 | 민간위탁 기간 | | |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 지출액 | 불용액 | 불용률 | 불용 사유 |
|----------------------------------|-----------|-----------|------|-----------------|------------|-----------|-------|------------------------------------|
| | 시작일 | 종료일 | 위탁구분 | | | | | |
| - | - | - | - | 13,510,063 | 12,220,272 | 1,289,791 | 9.5% | - |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 '15. 4.13 | '18. 3.31 | 신규 | 5,669,713 | 5,006,038 | 663,675 | 11.7% | 계약심사 등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 '13.11.15 | '16.11.14 | 신규 | 1,430,321 | 1,345,846 | 84,475 | 5.9% | |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 '12. 8.23 | '15. 8.22 | 신규 | 2,630,545 | 2,327,560 | 302,985 | 11.5% | |
| | '15. 8.23 | '18. 8.22 | 재계약 | | | | | |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 '12.12.14 | '14.12.13 | 신규 | 3,199,484 | 2,981,470 | 218,014 | 6.8% | |
| | '14.12.14 | '17.12.13 | 재계약 | | | | | |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G밸리 운영 | '15. 2. 4 | '16.12.31 | 신규 | 300,000 | 294,391 | 5,609 | 1.8% | 집행잔액 |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운영 | '14.12.10 | '16.12.31 | 신규 | 280,000 | 264,967 | 15,033 | 5.3% |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1)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2)에 의하면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위탁 사무(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울혁신센터 등)는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위탁사업의 회계 결과와 지도감독 결과서를 살펴보면,
 -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회계감사보고서에는 연구용역의 경우 준공 예정일에 임박하여 준공일을 변경한 경우가 3건이나 있었고, 수행처의 요청에 의해서 준공일을 변경하였으나, 지체상금 부과 여부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의 지도·감독 결과서의 세부시정조치 내역을 보면, 복무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근무상황부가 미비치되어 휴가, 공가, 출장 등 직원의 복무현황 및 관리가 불가능하였으며,

1)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①~⑥ 생략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제8조의2(회계감사 대상 사무)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휴가신청서 없이 무단결근 및 출장명령 없는 시내출장여비 지급, 상급자 결재 누락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초과근무대장 결재 누락 등 수탁기관의 미흡사항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참고자료 1 참고).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지도·감독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수탁기관 직원들의 2015년 상반기 지각자가 22명이나 되고, 3회 이상 지각자도 11명이나 있는 등 복무의무 준수가 미흡하며, 출장이 많다 해도 전직원이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면서 충전잔액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센터직원 채용 자격기준도 “위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채용상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도 있었음.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뿐 아니라 그 사업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³⁾에 의하면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으나, 역으로 민간위탁은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퇴색시키고 공적인 사명감이 부족하다는 단점 또한 있다고 할 것인바, 집행부는 신규사업 민간위탁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재 위탁시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재 위탁 여부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마. 예산불용 과다 사업 검토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3%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2.3%)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불용률이 30%를 초과하는 다음 사업(통계목)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 되도록 하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심사시 삭감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30%이상 불용 사업 현황〉

(단위: 천원)

| 세부사업 | 통계목 | 예산현액 | 지출액 | 불용액 | 불용률 | 불용사유 |
|------------------|------------|---------|--------|---------|-----|---|
| 공유서울 확산 | 기타보상금 | 20,000 | 10,500 | 9,500 | 48% | ○ '공유서울 디자인·인포그래픽, 웹툰 공모전' 시상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공모심사결과 디자인·인포그래픽 부문 최우수 및 우수 당선작이 없어 불용액이 발생함 |
|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 | 감리비 | 479,400 | | 431,900 | 90% | ○ 감리범위 축소 및 자체 감독시행 등 사업계획 조정으로 미집행 ○ 기술용역타당성심사에 따른 용역비 조정 등으로 인해 낙찰차액 발생 |
|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 공공운영비 | 54,035 | 20,838 | 24,317 | 45% | ○ 천만상상오아시스 재개발 용역에 전산개발비를 우선 집행하여 공공 운영비에 불용액 발생 |
|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 기타보상금 | 20,000 | 13,400 | 6,600 | 33% | ○ 전체채택 20만원, 부분채택 5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데 '15년 채택제안(136건) 중 부분채택(92건)의 비중이 높아 불용이 발생함 |
| 기본경비 | 국내여비 | 78,400 | 51,859 | 26,541 | 34% | ○ 관내·외 출장비 지급 후 집행잔액 |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13,120 | 6,596 | 6,524 | 50% | ○ 감사원 지적에 따른 과장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미집행 |
| 비영리 민간단체 등 의회활동지 | 행사운영비 | 8,760 | 5,725 | 3,035 | 35% | ○ 기부활성화 워크숍 미추진에 따른 예산 미집행 |
| | 행사실비보상금 | 4,000 | 2,000 | 2,000 | 50% | - 민관협력활성화를 위한 정보포럼과 연계 추진 |

| 세부사업 | 통계목 | 예산현액 | 지출액 | 불용액 | 불용률 | 불용사유 |
|------------------------------------|---------------|---------|---------|---------|------|--|
| 기본경비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3,220 | | 3,220 | 100% | ○ 감사원 지적에 따른 과장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미집행 |
|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 | 66,490 | 44,075 | 22,415 | 34% | ○ 마을행정지원 모임 운영 미지원 및 컨설팅 강의 미실시로 인한 불용액 |
| 마을공동체 교육 | 사무관리비 | 50,000 | 25,734 | 24,266 | 49% |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 안내 책자 제작이 '16년으로 연기되어 관련 예산 미집행 |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보호 및 근로 환경 개선 | 사무관리비 | 130,000 | 80,402 | 49,598 | 38% |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홍보사업은 청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시기(방학 또는 시험 종료된 10월 이후)에 집중하여 진행되어 일부 불용액 발생 ○ 아르바이트 실태 모니터링은 전연도 실시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결과물의 활용 등을 고려할 때 '15년에는 업종·지역별로 특성화 하여 노동 분야 전문 연구기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시행 |
| | 행사실비 보상금 | 260,000 | 117,100 | 96,546 | 37% | |
| 기본경비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3,220 | | 3,220 | 100% | ○ 감사원 지적에 따른 과장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미집행 |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 | 10,600 | 4,136 | 6,464 | 61% | ○ 인권단체 컨설팅 지원 및 회의비용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 사무관리비 | 66,000 | 45,491 | 20,509 | 31% | ○ 인권위원회 워크숍 개최 횟수 및 운영비용 절감으로 인한 집행 잔액 |
| | 민간인 국외여비 | 10,000 | | 10,000 | 100% | ○ 공무원국외여행심사시 민간인 국외 여비 지출의 선거법 저촉 우려의견 으로 부결되어 불용 |
| 시민인권 보호관 운영 | 국내여비 | 5,040 | 770 | 4,270 | 85% | ○ 시민인권보호관 3명 중 2명이 퇴직 하여 전체 출장일수가 감소하였고, 시민인권보호관 직급변경임용(시간 선택제입기제→일반입기제)에 따라 재무과 통합예산에서 지출 |
| 서울시민 인권 현장 확산 | 사무관리비 | 121,000 | | 121,000 | 100% | ○ '14년 현장 선포를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나, 제6차 시민위원회(14.11.28) 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15년도 예산 전액 불용됨 ○ '16년 예산 미편성됨 |
| | 시설비 | 70,000 | | 70,000 | 100% | |
|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인권 배심원제 운영 | 사무관리비 | 10,917 | 5,519 | 5,398 | 49% | ○ 시민인권 배심회의 운영비 집행잔액 - 배심회의 개최시간 단축으로 인한 회의 참석수당절감 및 자료집 발행 부수 축소 등 |
| 인권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사무관리비 | 40,000 | 26,323 | 13,677 | 34% | ○ 인권현장 표지석 및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및 인권조형물 및 남산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용역의 낙찰차액임 |
| 기본경비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3,220 | | 3,220 | 100% | ○ 감사원 지적에 따른 과장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미집행 |

- 특히, 100% 불용된 사업 중 “서울시민 인권헌장 확산사업(사무관리비 1억 2천1백만원, 시설비 7천만원)”은 6차 시민위원회(‘14.11.28)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이 불투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비 전체를 불용시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한 바 있으며,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사업 중 민간인 국외여비(1천만원)는 공무국외 여행심사시 민간인 국외여비 지출의 선거법 저촉 우려 의견으로 부결되어 불용되었는바, 이는 2015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동 예산이 「공직선거법」 제112조4) 및 제114조5)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전액 불용처리하여 지적된바, 향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집행 후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4)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家族의 범위는 第10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주요 내용〉

- 서울혁신기획관이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에 편성한 동 소요 예산은 전액 불용됨. 사유는 2015년 9월 인권조례 등에 민간인에 대하여 국외출장경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해당 사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가 통보되었기 때문임.
-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8월 법령·조례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외여행을 제공한 서울시 유사사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의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관련 사업의 중지를 요청한 바 있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의 국외출장이 부결된 것은 유사사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 및 요청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예산집행과정에서라도 법령 위반 소지를 차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4조는 2010년 1월부터 개정된 바가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액이라 할지라도 사전 검토가 미흡한 사례라 판단됨.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

참고 자료 1

〈서울혁신파크 세부시정조치 내역〉

| 연번 | 세부항목 | 지적사항 | 시정조치 |
|----|------|---------------------------|---|
| 1 | 회계관리 | 재정보증 미가입 | - 즉시 재정보증 가입 후 회계 업무처리 |
| 2 | 회계관리 | 각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불일치 | - 관련규정 숙지 및 관련서류 보완 - 구체적인 향후대책 수립 ※ 각 사업별 담당이 지출품의서 증빙서류 등 모든 회계 서류를 구비한 후 회계담당에게 제출하여 지출을 의뢰 ※ 각 사업별 담당은 물품 검수(검사) 조서 작성 후 즉시 회계처리 |
| 3 | 회계관리 | 증빙자료(견적서, 이체확인서 등) 누락 | - 관련규정 숙지 및 관련서류 보완 ※ 용역, 공사, 입찰 등 계약관련 법규 준수 - 구체적인 향후대책 수립 |
| 4 | 회계관리 | 업무추진비 등 지출 부적정 | - 관련규정 숙지 및 관련서류 보완 - 구체적인 향후대책 수립 |
| 5 | 회계관리 | 지출 부적정 | - 관련규정 숙지 및 관련서류 보완 - 구체적인 향후대책 수립 |
| 6 | 회계관리 | 법인카드로 결제 후 개인적립카드로 포인트 적립 | - 카드사용으로 발생하는 인센티브(포인트, 적립금)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세입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입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으로 사용 |
| 7 | 회계관리 | 1동 입주단체 임대면적 산정방식 부적정 | - 1동 입주단체에 대해 임대면적을 재산정하여 8~10월분 임대료를 소급적용하여 부과 후 산정방식, 내역, 금액 등 관련자료 제출 - 서울혁신센터와 입주단체 간 임대면적을 재산정하여 입주협약서 수정 및 재협약하고, 관련 사본 제출 - 관리비의 경우 임대면적에 따라 부과됨으로 8~10월분을 소급적용하여 재부과 후 관련 사본 제출 |
| 8 | 회계관리 | 1동 사용료 연체에 따른 납부독촉 미이행 | - 미납내역 9건에 대해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1차 납부독촉 고지 이행 ※ 향후 서울혁신파크 내 사용료 미납액이 발생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납부 독촉고지 확행 |

| | | | |
|----|------|--------------------------|---|
| 9 | 고용 | 세부계획 미수립, 인사위원회 미구성 등 | - 향후 직원 채용시 재발방지 대책(인사위원회 구성, 자격조건, 회의록·각종 심사자료·의결서 작성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채용 전·후 서울시에 보고 |
| 10 | 고용 | 불공정·불투명한 공개채용 | - 향후 직원 채용시 재발방지 대책(인사위원회 구성, 자격조건, 회의록·각종 심사자료·의결서 작성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채용 전·후 서울시에 보고 |
| 11 | 고용 | 임용서류 미구비 | - 인사기록 카드를 포함한 임용서류 재정비 |
| 12 | 고용 | 복무관리 소홀 | - 근무상황부 비치 - 관련규정 숙지 및 관련서류 보완 - 복무규정에 대한 전체 직원교육 실시 |
| 13 | 고용 | 초과근무 부당지급 | - 환수조치 및 초과근무대장 재정비 |
| 14 | 고용 | 수당 관련 | - 「2015년도 사업비 지원계획」에 의거 편성된 수당(직급, 시간외, 학자금, 가족, 연가보상비, 육아휴직)에 한해서만 지급 |
| 15 | 전문기술 | 비상연락체계 및 사고대비 매뉴얼 관련 | - 센터 개소 및 활동단체 입주 등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재정비 |
| 16 | 전문기술 | 물품대장 관련 | - 물품이력카드 재정비 - 기부물품 및 시설관리용역업체에서 인수받은 물품목록도 대장에 추가하여 관리 |
| 17 | 전문기술 | 사무편람 미개정 | -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활동그룹 입주관련 지침 등 편람 재정비 후 승인요청 |
| 18 | 전문기술 | 조직개편 관련 | - 2016년도 사업비 확정 및 서울시와의 협의 후 조직개편 계획 승인요청 |
| 19 | 전문기술 | 시설 안전점검 결과 미제출 | -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제출 |
| 20 | 전문기술 | 위임전결지침 미승인 | - 운영위원회 개최하여 승인 |
| 21 | 전문기술 | 분기별 정산보고서 미흡 | - 2/4, 3/4분기 정산보고서(종료된 사업 정산보고서 포함) 보완하여 다시 제출 - 사업의 경우 사업비 지출증빙서류 원본, 과업지시서 등 누락된 서류 보완 - 매 분기 정산보고서 제출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토 보고서 추가 검토 |
| 22 | 전문기술 | 문서등록대장 관리 미흡 | - 문서등록대장 일원화 및 관리철저 |
| 23 | 운영성과 | 선정심사 관련 문서 미비 | - 관련 서류 보완 |
| 24 | 운영성과 | 사업성과 달성 여부 | - 사업성과 달성 50% 미만 사업의 경우 보완계획 마련 후 서울시 제출 |